

(제2-4호)

###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 원고·신청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판결·결정사유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정처분은 적법하고 서울시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7. 11. 9.
7. 확인일자	2017. 11. 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에 대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이중 납부된 자동차 취득세의 원금, 가산세 및 이자등을 환급 받음

[작성요령]

주1) 아래에 해당하는 소송(가처분 포함)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때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주2) “판결·결정사유”는 소송의 포기·취하·인낙·화해, 판결, 결정, 명령, 신청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

주3)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